

▶ 계약자 의무

‘이용자’와 ‘제공자’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제공자’의 의무

1. 이용자 ‘의 건강관리 협조(단, 외출 및 병원 입원시 간호,간병,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유지관리
5.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이용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제공자’에게 통보
5. ‘이용자’의 병원 입원시 간호,간병,입.퇴원 절차,비용 납부등 제반 모든 절차진행에 대한 책임의무
6. 기타 사설생활 규칙이행

◆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의 해지

1.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공자’의 해지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전송으로 이용료 납부를 통보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1회당 최대 10일, 1개월 최대15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국고 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장기 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② 제①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공자' 는 계약기간 만료 15일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 )는 이후 05일 이내에 '을'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 )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 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 한다.
- ⑥ '이용자' (또는 '보호자'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0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 ▶ 시설급여(1일)

| 구 분  |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
| 요양급여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59,330                     | 55,060 | 50,770  |
| 비급여  | 상급침실 이용료           |                            |        |         |
|      | 식재료비(경관자 제외)       | 2,500원 X 3식 X 1일 = 7,500원  |        |         |
|      | 식재료비(경관 급식자)       | 4,000원 X 3식 X 1일 = 12,000원 |        |         |
|      | 간식비(1회)<br>-경관자 제외 | 1,000 X 1일                 |        |         |
|      | 이/미용료 등            |                            |        |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